
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

수신인 : 이 * * (54.06.26) 연락처 : 010-39**-****
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**구 **로 ***번길 *-* *층

항상 NH농협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고객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(장기카드대출, 대환대출)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9조(기업회원 약관 제20조)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의거, 아래와 같이 **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**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**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**인 바,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1. 대상

(기준일자 : 2026.05.08.)

차주	540626-1*****
대표카드번호	5430-17**-****-0597
연체시작일	2025-09-02

채무자	대출일자	만기일자	대출잔액(원)	연체금액(원)		
이**	2025-02-21	2025-09-01	3,274,040	미납원리금	원금	2,915,604
					수수료	18,752
				연체이자		339,684
				비용		0
				합계		3,274,040

* 기준일자가 경과한 이후 연체금액은 변동됨을 알려 드립니다.

2. 관련 통지사항

항 목	내 용
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	2026-05-22
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	카드/장기카드대출 연체
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	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이전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, 모든 카드이용대금(장기카드대출·카드대환대출 포함)에 대해 일시청구됩니다. 미상환 시 연체료 부담 및 신용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/방법	경기동부원예농협 홈페이지(https://dongbuwonye.nonghyup.com) 참조

아울러,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,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 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	소속	전화번호	사무실 주소
김효정	경기동부원예농협 신흥지점	031-751-0951	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2

2026년 05 월 08 일

발신인 : 경기동부원예농협 신흥지점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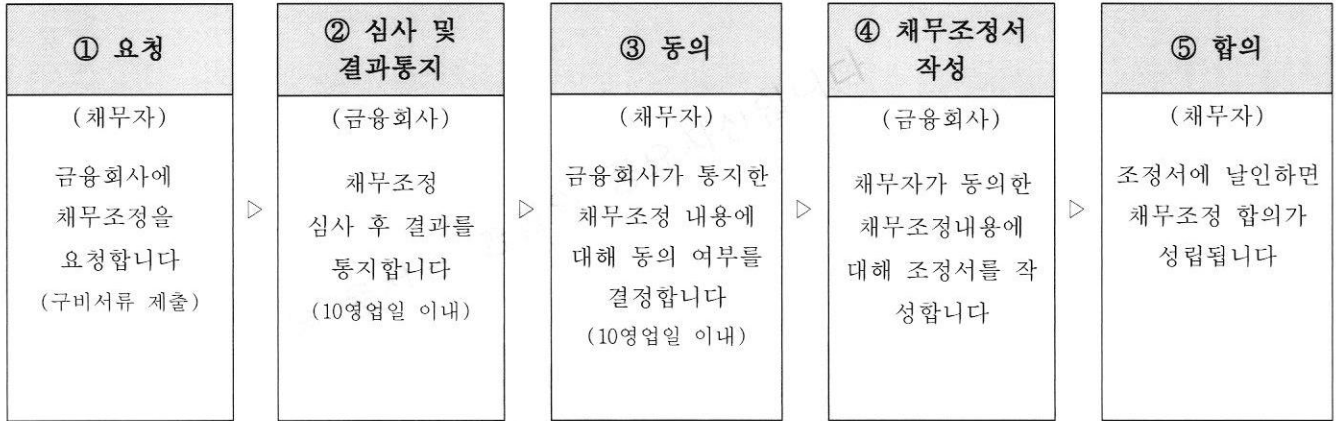
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채무조정 요청권

-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서는 당사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참고 : 채무조정 절차>



- 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